

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,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취업 지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, 제20조
- (2)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, 제29조

다. 위탁사무

- (1)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
- (2)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
- (3) 구인처 발굴 및 구직자 취업 지원
- (4)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
- (5) 기타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

라. 위탁기간 : 2027년 ~ 2029년

마. 소요예산 : 3,402백만원(국비 2,400, 도비 286, 시비 716)

바. 사업개요

- (1) 기 간 : 2027년 ~ 2029년
- (2) 대 상 : 취업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
- (3)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
- (4) 사업내용
 - 취·창업 알선 및 연계, 새일여성인턴 사업
 - 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, 집단상담 프로그램, 구직자 사후관리
 - 기업체 연계 및 구인처 발굴
 -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가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

-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

(1) 성과평가 결과 : 탁월(98점)

(2)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: 93점 *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

아.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3. 부서의견

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, 본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7조, 제20조
- (2)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3조,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

라.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

마.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바. 비용추계서

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

1.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5. 5. 2.(금) ~ 5. 13.(화)
- 위탁사무 :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
- 감사범위 : 2024. 1. 1. ~ 2025. 3. 31.
- 감사반 : 2명(여성정책팀장, 업무담당자)
- 감사방법 : 서면 및 현장감사
- 점검내용 : 운영현황, 회계처리 및 집행, 기타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

2. 감사결과 :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이루어지고 있음.

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

1.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26. 2. 4.(수) ~ 2. 5.(목)
- 대 상 :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
- 대상사무 : 2024. 1. 1. ~ 2026. 1. 31.
- 평가내용 : 해당 기간 내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전반
- 평 가 자 : 3명(가족정책과장, 여성정책팀장, 업무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의거 부서 자체 평가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평가결과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	
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기관운영 (10)	자원관리 (10)	사업실적 (25)	만족도 (15)
98	10	10	10	10	10	10	23	15

- 총 평
 -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상담, 정보제공, 직업교육훈련, 취업연계 등의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 -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목표치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,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음.

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1. 심의개요

- 일 시 : 2026. 3. 17.(화) 14:00
- 장 소 : 시청 3층 소회의실
- 참석대상 : 심의위원 6명
 - 참석자(5명), 불참자(1명)
- 심의대상 :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
- 심의내용
 -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 심의
- 심의방법 : 심의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 및 적격 여부 심의
 - 심의기준 : 운영주체 적격성, 사업운영 전문성 및 책임성, 지역사회 네트워크
 - 채점방식 :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·평균
 - 의결방법 :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기관 재계약
안건으로 상정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'선정' 여부 의결

2. 심의결과

- 심사 평균점수 93점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, 「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(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)」를 수탁기관으로 선정

관계법령

□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제17조(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혼인·임신·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,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
2.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,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
3. 취업·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
4. 직업교육훈련,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
5.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
6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,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7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전담인력 인건비, 직업교육훈련, 새일여성인턴,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최저임금 및 수당,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산정함
3. 비용추계의 결과

구분		연도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입	○ 국비	799,788	799,788	799,788	2,399,364
	○ 도비	95,292	95,292	95,292	285,876
	소계(a)	895,080	895,080	895,080	2,685,240
세출	○ 인건비	263,112	263,112	263,112	789,336
	○ 운영비	870,571	870,571	870,571	2,611,713
	소계(b)	1,133,683	1,133,683	1,133,683	3,401,049
□ 총 비용(a-b)		238,603	238,603	238,603	715,809

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		연도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	국 비	799,788	799,788	799,788	2,399,364
	도 비	95,292	95,292	95,292	285,876
	시 비	238,603	238,603	238,603	715,809
	민 간				
	기 타				
	합 계	1,133,683	1,133,683	1,133,683	3,401,049

5. 부대의견 :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, 국도비 편성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
6. 작성자 :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박현미(☎ 480-6537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연 도	항 목	계(천원)	산 출 기 초
2027	합 계	1,133,683	
	인건비	263,1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 및 수당 210,652,000원 • 활동경비 8,400,000원 • 4대보험 부담비용 25,920,000원 • 퇴직적립금 18,140,000원
	사업비	870,5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일사업관리비 13,000,000원 • 새일여성인턴 487,600,000원 • 직업교육훈련비 214,147,000원 •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비 68,150,000원 •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87,674,000원
2028	합 계	1,133,683	
	인건비	263,1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 및 수당 210,652,000원 • 활동경비 8,400,000원 • 4대보험 부담비용 25,920,000원 • 퇴직적립금 18,140,000원
	사업비	870,5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일사업관리비 13,000,000원 • 새일여성인턴 487,600,000원 • 직업교육훈련비 214,147,000원 •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비 68,150,000원 •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87,674,000원
2029	합 계	1,133,683	
	인건비	263,1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 및 수당 210,652,000원 • 활동경비 8,400,000원 • 4대보험 부담비용 25,920,000원 • 퇴직적립금 18,140,000원
	사업비	870,5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일사업관리비 13,000,000원 • 새일여성인턴 487,600,000원 • 직업교육훈련비 214,147,000원 •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비 68,150,000원 •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87,674,000원

소 관 부 서		가족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민 명 숙
	팀 장	백 은 영
	담 당 자	박 현 미 (480-6537)